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3 선고 2020가단18734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1. 주식회사 C

2. D

3. E

피고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신원 담당변호사 곽호성

변론 종결2021. 2. 17.

판결 선고2021. 3. 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158,522원 및 그 중 77,774,975원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F은 연대보증인으로, 다른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78,158,522원(대위변제금 77,774,975원 + 2020. 2. 13.까지 확정 지연손해금 383,54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77,774,975원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마지막으로 송달된 2020. 8. 26.까지는 연 9%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험기간 개시 전 채무에 관한 주장 ○ 피고 F은, 이 사건 보증보험 약정서 제12조(특약조항)에는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함」이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F은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설명을 들은 바 없고 개시 전 발생한 채무 액수도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피고 F에게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관해서까지 구상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고, 위 특약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1) 제6조 2) 제2항 제1·2호, 제1항 등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이 사건 보증보험 약정서(갑제3호증) 제12조 특약조항(이하 '이 사건 특약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2조(특약조항)본인과 보증인은 아래의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1.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함

2.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이행) 기일이 도래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함.

○ 살피건대, 갑제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피고 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G(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9. 8. 5. 체결된 사실, ②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거래 관계가 있었고 이 사건 보험기간 개시 전에 이미 82,062,313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보험기간 이후 추가로 82,062,313원의 채무가 발생한 사실, ③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고 회사는 임의로 소외 회사에 88,485,737원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법정변제충당에 따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보험금으로 대위변제한 77,774,975원 전액은 이 사건 보험기간 개시 후에 발생한 채무인 사실(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에 변제충당 방법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④ 피고 F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관계는 물론 이 사건 보증보험의 내용 등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 F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 내지 구상 의무는 '보험기간 개시 이후 발생한 채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특약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나아가 앞서 본 대로 피고 F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조항에 약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인회생 관련 주장 ○ 피고 F은, 2021. 1. 4.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한 이의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 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F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피고 F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차영민

별지

1) 제5조(약관의 해석)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제6조(일반원칙)연혁판례문헌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